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2. 30. 이견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 12.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3. 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6. 3. 1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3. 12.)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견태의원)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①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② ‘폐업 관련 법률 관련 지원’, ③ ‘채무·회생·파산 등 세무 관련 지원’, ④ ‘폐업 관련 심리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 등을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제5항 신설).

개정안의 취지대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및 세무 관련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 등이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될 경우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업과 관련된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항목에 점포철거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및 사업 정리 지원항목에 점포철거를 추가하고, 폐업 관련 지원항목을 통합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함(안 제 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 중 “컨설팅”을 “점포철거,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심리회복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 ----- ----- ----- ----- ----- ----- ----- ----- -----.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신설>	3. <u>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u>	3. ----- ----- <u>점포철거,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심리회복 등 지원</u>
<신설>	4. <u>폐업 관련 법률 관련 지원</u>	<삭제>
<신설>	5. <u>채무·회생·파</u>	<삭제>

<u><신 설></u> 3.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u>산 등 세무 관련</u> <u>지원</u> 6. <u>폐업 관련 심리</u> <u>적 어려움 완화를</u> <u>위한 심리상담 및</u> <u>심리회복 지원</u> 7.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중소벤처기업부</u> <u>장관은 제1항 각</u> <u>호에 따른 지원에</u> <u>관한 정보를 통합</u> <u>하여 제공하기 위</u> <u>하여 온라인 플랫</u> <u>폼을 구축·운영할</u> <u>수 있다.</u>	<u><삭 제></u> 4. (개정안 제7호와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⑤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